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 변경 〉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57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 변경(안 제12조)	3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외 12인

나. 발 의 일 : 2026. 5. 13.

다. 회 부 일 : 2026.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조성한 법적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정·중재 청구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관한 사건인 반면, 방송 보도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10% 안팎에 불과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실정임.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과 이중심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금이 법에서 정한 고유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 변경(안 제12조)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 -----.

현행법 제12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당초 공익자금이었으나 2000년 「방송법」 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방송발전기금(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변경된 바 있음.¹⁾

1) 언론중재위원회 소관기관 변경 주요 연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구분	‘98년 이전	‘98년~’99년	‘00년~’10년	‘11년~’25년	‘26년
운영재원	공익자금		방송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지원기관	공보처	문화관광부	방송위	방통위	방미통위
행정감독기관	공보처	문화관광부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며,²⁾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문·방송·인터넷신문 등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³⁾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체계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관련하여 국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소관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의 불일치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편성과 결산에 따른 성과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구⁴⁾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진흥기금의 규모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을 뒷받침할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언론진흥기금에서 약 150억원('26년 기준 148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가 대부분으로 매년 증가) 규모의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고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언론진흥기금 여유자금은 2025년 532억원에서 2031년 66억원으로 급감이 예상되어 불과 5년만에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2026년 언론진흥기금 사업비는

4)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8억원에 불과한 반면,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148억원)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112억원)은 260억원에 달해 기금 지출의 과반 이상이 언론진흥이 아닌 기관운영 및 타 기금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이원화 문제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언론진흥기금의 재정 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고유 목적사업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및 성과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1

타부처 및 협회 등 의견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26.5.26.)	• 수용 -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과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언론진흥재단 (‘26.5.26.)	• 언론진흥기금은「신문법」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진흥과 저널리즘 품질 향상 등을 통해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중재위 운영재원 부담 시 기금 본래 정책 목적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기금 목적 외 부담 확대 우려)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언론산업 진흥과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반 뉴스 혁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지역·중소언론 지원, 미디어교육 확대 등 정책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정적·경상적 기관 운영비까지 부담할 경우 기금의 정책사업 투자 여력 축소 우려 - (기금 운용 경직성 심화) 중재위 운영비는 인건비·경상비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구조로 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기금 재정 운용의 경직성 확대 가능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탄력적 재원 배분 우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언론기금 관리·운용 주체인 언론재단 기관 운영비 역시 언론기금에서 직접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정책 목적사업 확대 요구 지속) 최근 국회는 언론 공적 기능 강화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AI 기반 뉴스 혁신, 신문유통 활성화, 미디어교육 확충, 뉴스미디어 디지털화 등 언론진흥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 중인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위 운영 재원까지 추가 부담 시 고유 목적사업 재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
언론중재위원회 (‘26.5.21.)	• 언론중재법 소관부서(문체부)와 예산지원기관(방미통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 언론진흥기금을 중재위 운영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론진흥기금 조성 규모와 중재위 예산 규모를 감안한 지원 여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언론진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흥기금을 지원받는 유관기관·단체 등의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는 바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준사법기구인 중재위가 '신속·원만한 언론분쟁해결'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확립하는 동시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구조가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중재위 예산 과소지원 누적된 상황으로 현재도 기능 제약이 상당한 실정(조정건수 '07년 1,043건 → '25년 4,026건, 예산 '07년 7,549백만원 → '25년 14,545백만원, 사건처리기간 '25년 28.7일로 법정기한 14일 초과)
한국신문협회 (26.5.28.)	- 행정감독과 예산지원 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 - 하지만 언론진흥기금은 국내 언론매체에 집행된 정부광고 수수료(10%)를 주 재원으로 삼는 언론 '진흥'을 위한 고유 목적 기금으로 중재위 운영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기금 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고, '26년 언론진흥기금 사업비 예산이 178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 재원 없이 '26년 기준 148억원에 달하는 중재위 운영비를 부담할 경우 본연의 목적인 언론진흥 사업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며 이는 언론 산업의 공적 기능과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큼 - 인터넷신문의 중재 청구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중재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언론중재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보도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한 일반 국민이므로 운영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바 문체부의 일반 회계나 국고출연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한국방송협회 (26.5.22.)	• 찬성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의 90%는 신문·인터넷 신문 등과 관련된 것으로, 방송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 · 기관 이원화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고, 아리랑 국제방송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이 '26년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된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언론진흥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 · 아울러 신문법 제35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호에서는 위 기금의 용도로 '6.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방송사업자들도 정부광고 수수료를 통해 언론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언론진흥기금을 중재위 주재원으로 하는 것이 기금용도에 부합하고 관련 사업자의 기여를 포섭할 수 있어 타당

참고 2

언론중재위 사건 처리 및 예산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건 처리 현황

- (매체별 청구현황) 최근 5년간 매체별 청구건수는 인터넷신문(61.2%), 인터넷뉴스서비스(12.7%), 방송(9.6%), 일간신문(7.3%) 순

연도	청구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기타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2021	4,278(100)	322(7.5)	131(3.1)	495(11.6)	8(1.9)	216(5.0)	2,477(57.9)	609(47.7)	20(4.7)
2022	3,175(100)	234(7.4)	75(2.4)	387(12.2)	6(1.9)	149(4.7)	1,857(58.5)	450(14.2)	17(0.5)
2023	4,085(100)	388(9.5)	99(2.4)	345(8.4)	8(0.2)	218(5.3)	2,491(61.0)	498(12.2)	38(0.9)
2024	3,937(100)	287(7.3)	89(2.3)	317(8.1)	10(0.3)	176(4.5)	2,537(64.4)	473(12.0)	48(1.2)
2025	4,026(100)	208(5.2)	103(2.6)	331(8.2)	6(0.1)	242(6.0)	2,579(64.1)	451(11.2)	106(2.6)
합계	19,501(100)	1,439(7.3)	497(2.5)	1,875(9.6)	38(0.2)	1,001(5.1)	11,943(61.2)	2,476(12.7)	229(1.2)

- ('25년 처리현황) 조정성립이 41.0%로 최다

매체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 송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신 문	311	152		8	93 (2)	10	2	29	17		61.2
방 송	331	170	1	3	90(3)	23	6	21	17		64.6
잡 지	6	4			1	1					80.0
뉴스통신	242	91	3		38(3)	22	3	75	10		79.3
인터넷신문	2,579	983	24	22	523(8)	204	56	615	143	9	70.6
인터넷뉴스서비스	451	209	3		99(3)	31	4	85	20		72.1
기 타	106	44	9		26	7	1	13	6		67.3
계	4,026	1,653	40	33	870(19)	298	72	838	213	9	69.9

* ()안의 숫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

** 피해구제율은 전체 청구건에서 기각·각하·이송 건을 제외한 청구건 대비,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중 동의, 취하건 중에 구제(청구를 언론사에서 수용하여 취하한 경우 등), 괄호안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 (처리기간) 법정 처리기간인 14일 도과 중
- ('21년)18일 → ('22년)15일 → ('23년)21일 →('24년)25일 →('25년)26일

□ 예산 현황 : '26년 148억원

- 인건비 88억원, 사업비 33억원, 경상비 27억원

구분	'25년(백만원)	'26년(백만원)	증감액	비고
합계	14,545	14,819	274	
인건비	8,476	8,773	14	사무처 직원(정원 100명) 보수, 4대보험 등
경상비	2,740	2,703	△37	서울 및 지역 사무소 등 임차료(1,752백만원), 공공요금, 중재위원 직무수행경비 등 운영비
사업비	3,329	3,343	14	언론분쟁 조정 및 기사심의, 전산시스템 운영, 조사연구, 홍보 및 교육 등